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판 결

사 건 2018고단1479 가. 사기  
나. 약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정영주(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황웅제(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1. 9.

###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 1. 약사법위반

피고인 B는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 A은 2015. 10. 2. D약국을 인수하고, 약국개설자로



등록하였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 B는 그 즈음부터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약사인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 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8. 3. 7.경까지 위 D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약국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A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고단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요양급여 명목으로 26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359만 4,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



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관련 약국현황자료 통보, D약국 관리약사 현황,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1. 약사법위반업소 수사의뢰(고발), 출장보고서, 약국등록대장

1. N은행 계좌거래내역, O은행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113쪽)

1. 수사보고(자료 회신, P 전화조사, 안양세무서 협조 요청사항, M의 Q 도장 제시, F, G, A 동종범죄전력,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2019-01-30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기간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국을 폐업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편취 금액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관여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_\_\_\_\_



: 2019-01-30

## 범 죄 일 랑 표

No.	지급일자	지급액	No.	지급일자	지급액
1	2015.11.11.	2,680,000	30	2017.01.23.	13,990
2	2015.11.23.	250,370	31	2017.02.13.	2,700,000
3	2015.12.11.	2,350,000	32	2017.02.20.	265,650
4	2015.12.18.	229,630	33	2017.03.16.	2,110,000
5	2016.01.21.	2,900,000	34	2017.03.24.	196,180
6	2016.01.29.	259,690	35	2017.04.05.	-45,070
7	2016.02.18.	3,100,000	36	2017.04.21.	3,590,000
8	2016.02.24.	295,470	37	2017.04.21.	-27,960
9	2016.03.11.	2,770,000	38	2017.04.26.	354,850
10	2016.03.16.	169,400	39	2017.05.04.	-11,200
11	2016.06.07.	3,117,520	40	2017.05.12.	2,610,000
12	2016.06.07.	2,552,340	41	2017.05.18.	167,120
13	2016.06.16.	2,720,000	42	2017.08.10.	2,090,000
14	2016.06.27.	58,870	43	2017.08.11.	2,023,820
15	2016.07.13.	2,240,000	44	2017.08.17.	491,770
16	2016.07.22.	219,700	45	2017.08.21.	2,350,000
17	2016.08.23.	2,830,000	46	2017.08.24.	-57,030
18	2016.08.31.	279,240	47	2017.08.30.	552,630
19	2016.09.22.	2,852,960	48	2017.09.13.	2,320,000
20	2016.10.24.	2,370,000	49	2017.09.19.	137,760
21	2016.11.02.	239,070	50	2017.12.04.	1,580,000
22	2016.11.11.	2,270,000	51	2017.12.04.	2,340,000
23	2016.11.23.	227,810	52	2017.12.11.	2,650,000
24	2016.12.12.	2,650,000	53	2017.12.11.	-24,500
25	2016.12.15.	257,670	54	2017.12.13.	560,530
26	2017.01.09.	75,810	55	2017.12.14.	372,340
27	2017.01.11.	2,130,000	56	2017.12.22.	627,440
28	2017.01.17.	173,750	57	2018.02.08.	1,328,150
29	2017.01.18.	70,000	58	2018.03.07.	-10,980
				합계	73,594,790